제5장 근로자 개념과 법률문제, 취업규칙



1. 근로자와 사용자

■ 근로자 개념

- 법률: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
- 판례: 사용자와 **종속적 관계**에서 **지휘감독(지휘명령)**을 받아 일하는 사람

✓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

- 노동관계법령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(지휘명령)을 받아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함.
-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 노무를 제공하는 자(도급, 용역, 위탁계약, 프리랜서 등 = 택배기사, 레미콘 기사, 골프장 캐디, 보험설계사 등)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임.
- 즉 이들과 같이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, 독립적 노무를 자는 근로기준법 보호 대 상이 아님.

1. 근로자와 사용자

■ 사용자 개념

- 사용자란 <u>사업주</u> 또는 사업의 <u>경영담당자</u>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<u>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</u> <u>자</u>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)

• 경영담당자

-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(대리)하는 자.
-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/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
- 인사, 급여, 후생,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(통상 각 부서장, 부장, 차장 등). 다만,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(위임전결 범위, 근무평정 권한, 지휘명령 권한 등)
- 그 <u>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</u>되는 위치에 있는 자(대표이사 등경영진 비서, 전용운전기사, 감사부서, 시설 보안 담당 등). 다만, **업무의 내용이 보조적, 조언적인 것에 불과** 하여 업무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는 해당하지 않음

1. 근로자와 사용자

- 노동조합 개념(노조법 제2조 제4호)
- "노동조합"이라 함은 <u>근로자가 주체</u>가 되어 <u>자주적으로 단결</u>하여 <u>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 기타 근</u> <u>로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</u>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 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.
- 가.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
- 나.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
- 다. 공제·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라.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
- 마.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
2. 근로자와 사용자 관련 법적 문제

■ 근로자성 문제

- 판례는 <u>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, 계약의 형식적 측면(계약서의 명칭이</u> 근로계약인지, 아닌지)보다는 실질적인 측면, 즉 업무 수행 과정에서 "종속성"이 나타나는지, "지휘명령(지휘감독)을 받으면서 일하는지" 여부에 주목하고 있음
- 실무에서는 어떠한 노무공급계약의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함. 특히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사자임에도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소송들이 많이 제기됨. 그 이유는 자신이 만일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아 근로자로서의 수많은 권리들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임
- 근로계약이 아니라, 위탁계약, 용역계약 등 다른 명칭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적 관계는?
 - → 근로계약이라면?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됨
 - → 근로계약이 아니라면?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

■ 대법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
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 기준
- 단, 각각의 항목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1)을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삼되 나머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
- 1)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
- 2) <u>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</u> 등이 적용되는지
- 3) 사용자가 <u>근무시간, 장소를 지정</u>하고 있는지
- 4) 작업도구 등 <u>생산수단의 부담</u>을 지는지
- 5) 보수의 노무 대가성, 기본급, 고정급 유무
- 6) <u>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</u>
- 7) <u>노무공급의 계속성 및 상대방 전속성 유무와 정도</u>
- 8)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여부



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사례와 사실관계

1) 헬스트레이너

- 출퇴근 카드 등 <u>근태 관리</u>, 휴가 사용시 승인 등 결재 필요, 헬스트레이너 역할 외에 기타 관리 업무(청소, 회원관리, 주말당직표 작성 등)의 업무 수행

2) 헤어디자이너

 출퇴근 카드 등 근태 관리, 지각 및 무단결근시 벌금 부과, 자유로운 휴가사용 제한, 미용시술 업무 외에 회의 참석, 매장홍보활동 참석, 미용시술금액 및 할인적용 독자 결정 불가, 미용실 이 공급하는 시술제품, 미용기계 사용, 보수체계(고정급 또는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 중 높 은 금액)

3) 입시학원 강사

- 강의시간, 강의장소 지정, 강의 외 부수적 업무 수행, 강의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점 인정

■ 근로자 부정 사례와 사실관계

1) 헤어디자이너

- 공동으로 미용실 운영에 대한 약정을 하며 <u>매출액을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</u>, 달리 <u>기본급이나</u> 고정급 없는 점, 영업시간, 결근, 지각 등에 대하여 관리, 감독하였다는 증거가 없음

2)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

- 사업소득세 스스로 납부, <u>수업 내용 방법 등에 지휘감독도 없고</u>, 강의평가 등 근무태도 평가도 없고, 해당과목 강의시간 외에 출퇴근 시간의 정함도 없고 <u>보수도 수강료 수입의 50%를 배분</u> 받아, 강사마다 또는 동일강사도 월마다 소득의 변동이 많은 점을 들어 근로자성 부정



₭BS | 1일 전 | 네이버뉴스

'5년 소송' 남해화학 **사내하청**, 오늘 첫 **정규직** 출근

지난 달 대법워으로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남해화 학 사내하청 노동자 42명이 정규직 신분으로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. 남해화학 비...

남해화학 여수공장 **하청**노동자 42명 **정규직** 입사..."추가 ... 데일리한국 | 1일 전 | 남해화학**사내하청** 노동자 42명, **정규직**으로 첫 출근 역수넷통뉴스 | 1일 전 여수 남해화학 하청노동자 42명 정규직 첫 출근 전국매일신문 11일 전

♣ 뉴스1 | 2023.09.19. | 네이버뉴스

남해화학 비**정규직**회, 원청에 "**정규직** 전환" 촉구...대법서 최종 ... 민주노총 남해화학 비정규직회는 19일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'근로자 지위 확인 소 송'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"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...

대법원 "남해화학 **하청** 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" KBS | 2023.09.19. | 네이버뉴스 남해화학 사내하청.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... 시... 여수넷통뉴스 | 2023.09.19. 남해화학 '여수산단 최초'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매일노동뉴스 | 2023.09.19.

▲ 남도일보 2023.09.20.

여수산단 남해화학 비**정규직**지회, "원청, 노동자들 **정규직** 전환해... /민주노총 남해화학비정규직회 제공 국내 1위 비료 제조사로 전남 여수국가산단에 소재한 남해화학의 사내하청 노동자(민주노총 비정규직지회)들이 지난 19일 사...

M 전남매일 | 2022.09.15.

"포스코, **사내하청** 노동자 **정규직** 전환해야"

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5일 "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스코 사내하청 비정규직 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"고 촉구했다.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...

"대법원 판결대로 포스코 **하청** 노동... kbc광주방송 | 2022.09.15. | 네이버뉴스

<u>≖₩₩</u> 프레시안 2022.07.28. 네이버뉴스

대법 "포스코 **사내하청** 노동자 포스코 소속 **정규직** 전환해야"

정 변호사는 "포스코와 대리인은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의 업무는 중간에 흐름이 끊긴다고 주장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자동차 생산 공정처럼 컨베이...

대법 "**사내하청**도 포스코 근로자"...**하청**지회 노조 "불... 청년일보 | 2022.07.28. "포스코 **하청** 노동자도 **정규직"**···대법원, 11년만에... 서울파이낸스 | 2022.07.28. 대법 "**사내하청**도 포스코 소속 노동자"···... 경향신문 | 2022.07.28. | 네이버뉴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. 대법원 불법파견 확... 비지니스코리아 | 2022.07.28.

관련뉴스 8건 전체보기 >

아주경제 | 2022.07.28.

대법, 포스코 **사내하청** 직원들 '근로자 인정'..."**정규직** 전환 늘려...

소송을 주도한 금속노조 포스코**사내하청**지회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. 하청지회는 "대...

[판결] 대법원, 포스코 **사내하청** 노동자 '**정규직** 지위' ... 법률신문 | 2022.07.28. - [기획] "포스코 불법 파견"... 짐이 된 ... 디지털타임스 │ 2022.07.28. │ 네이버뉴스



▪ 도급

- 당사자 일방(수급인)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(도급인)이 그 일의 결과에 대 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
- 각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
- 도급인과 수급인: 도급계약 관계
- 수급인과 수급업체 근로자: 근로계약 관계
- 도급인과 수급업체 근로자:
- ※ 도급인은 법률상 관계 없는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하 여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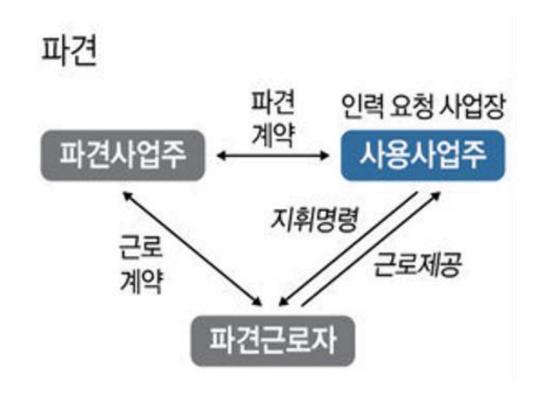


■ 근로자 파견

- 근로자 파견의 주요 내용
-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,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

✓ 주요 용어 개념

- 파견근로자: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
- <u>파견사업주</u>: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(근로계약)을 체결 한 사업주
- <u>사용사업주</u>: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업주
- <u>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</u>: 직접 고용관계 없으 나 자신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명령할 수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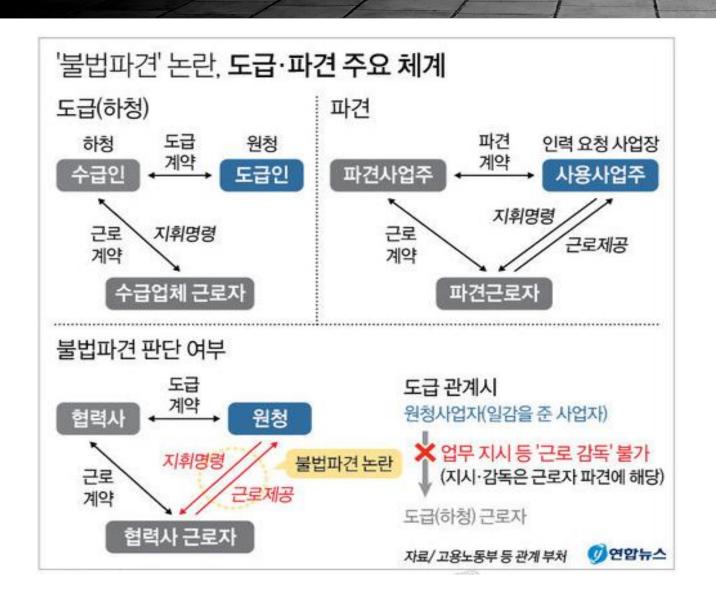
• 근로자 파견의 대상 업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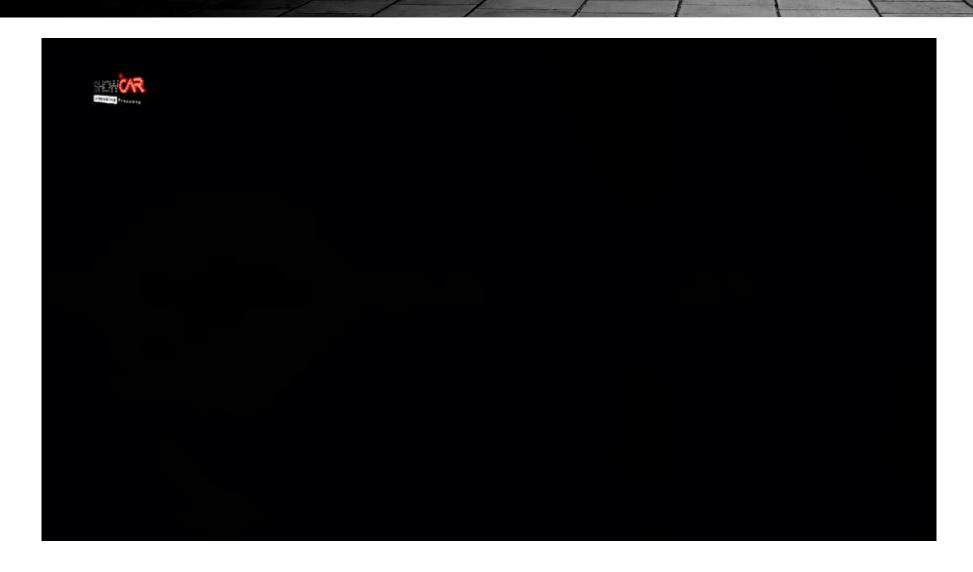
- 대통령령으로 정한 32개 업무.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외함.
- 단, 위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, 출산·질병·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
 오는 일시적·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(3+3, 최대 6개월)에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음
- <u>한편, 절대적 금지 대상 업무</u>로 <u>건설현장 업무,</u> <u>선원 업무,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</u> 등을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파견을 금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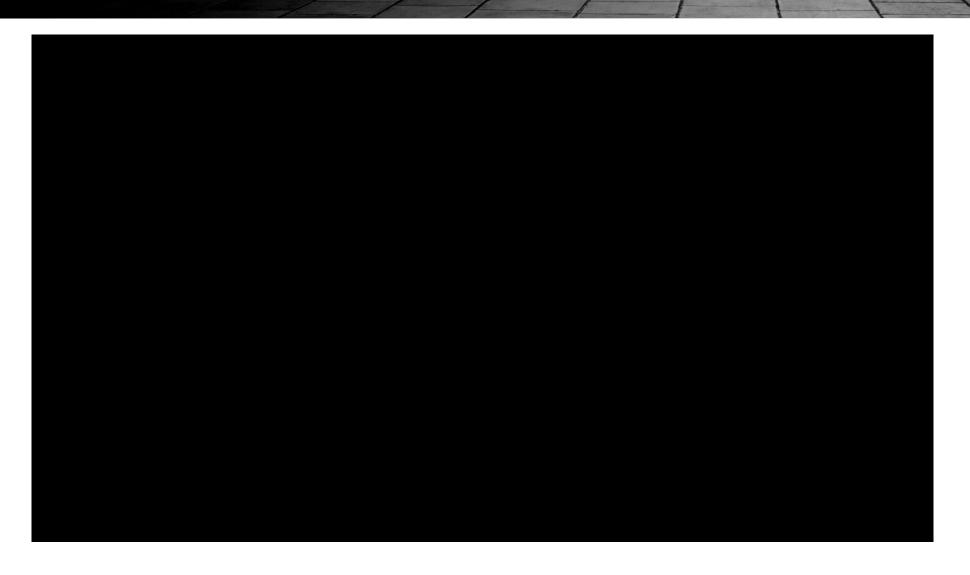
• 파견기간

- 1년을 넘지 못하고,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가능하나,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<u>최대</u> 2년을 넘지 못함
- 다만, **고령자(만55세 이상)**에 대해서는 **2년을 초과**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
-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무
-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**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 여야 한다**.
- ①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- ② 직접생산공정 등 **절대금지 업무에 사용**한 경우
- ③ 총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
- ④ **무허가 파견업체**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- →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 발생(근로조건 차액에 대한 한 손해배상)/ 형사처벌







■ 취업규칙의 의의

- 취업규칙은 **명칭을 불문**하고 **근로조건**에 관하여 **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**하기 위해 <u>설정한 규칙</u>
-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,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.

■ 취업규칙의 작성

- <u>상시 10인 이상 근로자</u>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, 게시 하여야 함(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- 근로시간(시업, 종업, 휴게, 휴가에 관한 사항), 임금(퇴직금, 기타 각종 제수당), 퇴직, 징계, 포 상, 안전과 보건 등에 관한 사항 기재
- <u>인사규정, 복무규정, 징계규정, 휴가규정, 경조사규정, 급여규정 등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</u>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

- 취업규칙의 변경
- 요건: 의견청취 의무
- 해당 사업장에 **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조**가 있는 경우, 그 노조의 의견을, 만일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**근로자과반수**의 의견을 들어야 함
-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

-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
- 요건: 과반수노조의 동의 또는 근로자과반수 집단 동의
-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다면 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만일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 필요
- 과반수란? 하나의 취업규칙에서 하나의 근로조건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
-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
- ✓ 집단동의란, <u>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의 동의</u>

-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
-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전체 근로자 각각의 개별적 입장의 유불리 여부
-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, 대체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

- 기존 근로자 vs 신규 입사자
-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,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종전 근로 자에 대하여만 무효이고, 변경 이후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

■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

- 종전 판례는 불리한 변경이라도, 동의를 대신할 만한 '사회통념상의 합리성'이 있다면 동의를 얻지 않아도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을 오랜 기간 유지하였음.
-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'사회통념상 합리성 '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판시하여 '사회통념상 합리성 ' 법리를 폐기함.
- 다만, '집단적 동의권 남용'이라는 법리를 제시하며 근로자집단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함(2023.5.11. 대법관 7:6)

■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판단 기준

-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
-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진지하게 설득 노력하였지만
- 노동자 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한 경우

요약

- 1. 근로자란 사용자와 ()관계에서 ()을 받아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
- 2. 근로자 파견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을 사용하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()해야 한다.
- 3. 근로자 파견은 최대 ()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- 4.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(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 그 사업장에 ()가 없으면 ()의 ()동의를 얻어야 한다
- 5. 최근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,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했던 (을 폐기하고 ()이라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했다